교원연구년제운영규정

제정 2011.08.01

제정 2014.08.08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.) 전임교원이 국내외에서 연구활동(학술연구와 산학협력연구)(이하 "연구활동"이라 한다.)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**(정의) 교원의 "연구년"이라 함은 본 대학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전임교원이 본 대학의 수업 등 일정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.
- 제3조(연구년의 기간) ①연구년의 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이내로 한다.
 -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 당초 승인된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연구년 기간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4조(자격) ①연구년 수혜교원(이하 "연구교원"이라 한다.)은 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7년 이상인 교원으로 한다.
 - ②연구교원은 제6조제2항과 같은 뚜렷한 연구계획이 있는 자에 한한다.
 - ③교무위원으로 재임 중에는 연구교원 신청을 할 수 없다.
 - ④휴직기간은 계속근무년수 산정에서 제외하며, 휴직기간 중에는 연구교원 신청을 할 수 없다.
 - ⑤연구교원으로 선정되었던 교원은 복귀일로부터 7년 이상 근속하여야 연구교원을 재신청 할수 있다.
- 제5조(신청) 연구교원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신청서를 연구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**제6조**(선정) ①연구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 - ②교비지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·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연구파견이 예정된 교원은 연구교원으로 간주하고 연구년 선정 대상에서 우선 한다.
 - ③연구교원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.
 - 1. 제2항에 해당되는 자
 - 2. 연구계획이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된다고 인정된 자
 - 3. 교원업적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자
 - 4. 연구교원으로 선정되었던 횟수가 적은 자

- 5.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
- 6. 상위 직급인 자
- 7. 연장자
- **제7조**(인원) ①연구교원의 인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동일기간 중 전체 전임교원 총수의 1/20범위 내에서 전공당 1인 이내로 한다.
 - ②전공(학과)당 교수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다.
- 제8조(연구교원의 처우) ①연구교원은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.
 - ②연구교원에게는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
 - ③연구교원에게는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④연구년 기간은 승진 및 호봉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서 포함한다. 다만 연구 기간 중의 승진은 유보된다.
- 제9조(연구교원의 의무) ①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후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.
 - ②연구년이 만료된 교원은 복귀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후 3년 이상 본 대학에 재직하여야 한다. 다만, 징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제10조(제재조치) 연구교원으로 파견되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.
 - 1.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은 면직의 절차를 거쳐 면직처리 하여야 한다.
 - 2.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중 본 대학에서 지급한 급여중 상당분을 반환하여야 한다.
 - 3.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중 본 대학에서 지급한 급여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강의대체) 연구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학과(부)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강사로 대체할 수 있다.
- 제12조(주관부서) 교원 연구년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- **제13조**(예외규정) 총장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(□연구교원, □해외연수) 신청서

결	담	당	팀	장	처	장	총	장
재								
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소속	학과(부) 전공	직 위	1
임 용	일 자	년 월 일	근 무 년 수	- 년 개월
연 구	기 간	년 월 일 [~]	년 월	일(개월간)
신 청	사 유			
연 구 과	제 명			
연구비조	달계획			
연구체	류기 관			
첨 부	1. 연구계획서 1부 첨 부 서 류 2. 직무보완 대책 및 학과(부) 의견서 1부 3. 기타 증빙서류(초대장 등) 1부			

위와 같이 연구 및 해외연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①

우송정보대학 총장 귀하

직무보완 대책 및 학과 의견서

담당직무 보완대책						
학년도 /	담당과목 및	시간	대 행 자			
학년도 / 학기	과 목 명	시 간	과 목 명	시 간	성 명	
학년도						
(학기)						
학년도						
(ぶしつ))						
(학기)						

해당학과 교수 의견서

- 1. 담당직무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
- 2. 연구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의견
- 3. 기타 참고 의견

확	전 공 교 수 (전체 서명)	학과(부)장
인		

연 구 계 획 서

성				명	(1)
소	속	및	전	공	
연	구	과	제	명	
연구	·의 필요	보성 :			
연 -	구 방 병	∄ :			
기대	되는 성	성과 및	활용병	방안	

서 약 서

소 속 : 성 명 : 주 소 : 생년월일 :

- I.상기 본인은 연구년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 - 가. 연구년 기간 중 본 대학 교수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.
 - 나. 대학의 급격한 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본 대학의 복귀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이에 수용하다.
 - 다. 연구년의 목적이 본인 개인의 개발은 물론 대학의 장기적 개발 계획의 일환 이라는 점을 숙지하고, 본인이 복귀 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, 복귀 후 3년 이내에는 퇴직하지 아니 한다.
- Ⅱ.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본 대학이 사회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며, 특히 상기 'I의 다'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, 보상적 성격의 지급액 및 연금부담금 중 법인부담액은 대학에 반환한다.

년 월 일

서약인: (인)

우송정보대학총장 귀하